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12 선고 2022가단270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

변 론 종 결 2023. 3. 15.

판 결 선 고 2023. 4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493,150원 및 그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3. 19.부터 2022. 6. 15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① 피고 C 주식회사(이하, ‘피고 회사’라고만 한다)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‘과제명 : E, 총사업기간 및 협약사업기간 : 2018. 6. 1.부터 2019. 5. 31.까지, 지원금(간접보조금) : 1억 원’으로 하는 콘텐츠지원사업(간접보조사업)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, 그 지원금 반환에 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8. 6. 20.경 원고와 ‘피보험자 : 한국콘텐츠진흥원, 보험가입금액 : 1억 원, 보험기간 : 2018. 6. 1.부터 2019. 11. 30.까지’로 하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(이하, ‘이 사건 보증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, ② 위 협약기간 종료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피고 회사에게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, ③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20. 2. 19.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, ④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하고 있는 연체이율이 보험금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인 2020. 3. 18.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100,493,150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3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. 6. 15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휘